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#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황우진  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## 보도자료

2024. 5. 1.(수)

###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, 강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서원익)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오늘(5. 1.) 구속기소하였음
-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,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,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음
- 검찰 수사결과,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,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
- 한편,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, 피고인이 '쫓개기 처방'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함
-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

# 1

## 사건관계인

- 피고인 : A(남, 74세, 자영업)
- 피해자 : B(여, 58세, 무직)

※ B는 2003.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영등포역에서 노숙

# 2

## 공소사실 요지

- '24. 2. 8.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를 상대로 성폭행 목적으로 졸피뎀 등 성분이 든 수면제(21정, 7일치)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항거 불능케 하여 강간 [강간·마약류관리법위반]
- '24. 3. 29.~4. 3.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를 상대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(42정, 14일치)를 총 5회에 걸쳐 몰래 먹인 다음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케 함 [강간살인·마약류관리법위반]

# 3

## 수사 경과

- '24. 4. 3. B가 사망한 변사사건 발생
- '24. 4. 5. ~ 6. 검찰,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및 발부
- '24. 4. 12.~30. 검찰, 송치 후 수면제 처방 병원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

- 압수수색(A주거지, 건강보험공단, 병원 등), 수면제 처방 경위 확인
- A의 통화내역, 발신기지국위치, 카드 결제내역 등 확인
- 여관 업주, 수면제 처방 의사 등 참고인 조사
- 사인 관련 법의학자 자문 의뢰

- '24. 5. 1. 검찰, A를 강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

## 4

## 수사 결과

피고인이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계속 수면제를 먹인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강간살인죄로 기소함

-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과 B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확인되었으나, 수면제 복용에 따른 B의 신체상태 변화가 강간살인 혐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음
- A는 B와 1회 성관계 후 B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, 오로지 성폭행을 목적으로 B에게 불과 하루 만에 무려 9일치 수면제를 몰래 먹였음
  -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B는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
- A는 이와 같이 B의 심각한 신체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 조치는커녕 B가 조금씩 움직이며 성폭행 시도를 방해하자 피해자를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생각으로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먹였음
- 이처럼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은 채 장시간 누워있는 상태로 만들고도 수면제를 추가로 먹여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

• 폐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(혈전)가 떨어진 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으로, 장시간 누워있거나 장시간 비행기 탑승 등 혈액 순환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,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함

- 한편, 경찰은 피해자 사망(4. 3.) 관련 범죄사실만 송치하였으나, 검찰은 A가 그 이전인 '24. 2. 8.경에도 B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 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함께 기소하였음

**피고인이 '쪼개기 처방'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혀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함**

●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하였음

- A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, 알프라졸람,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아 오던 중 최근에는 기준을 초과한 4주치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음료수에 타 B에게 몰래 먹인 것임

· 식약처 마약관리과의 '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(졸피뎀 제외) 안전사용 기준' (2023. 7.)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의 1회 처방 용량은 최대 21일임

● 검찰수사 결과, A는 의사 C에게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1회에 4주치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였고, C는 이를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- 사실은 A가 1회만 진료·처방받았음에도 전산, 진료기록부 등에 2회에 나눠 진료·처방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소위 '쪼개기 처방'으로 4주치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C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함

※ 예컨대 사실은 1. 1.경 4주치를 처방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·전산상으로는 1. 1.경 2주치, 1. 15.경 2주치를 각 처방한 것으로 기재함

**5**

**향후 계획**

●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■■■